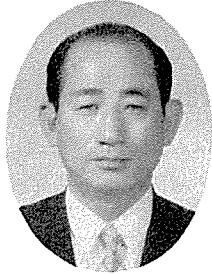


現行 建築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金 漢 涉



1. 序論

현대 도시의 성격상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都市計劃이 필요하므로, 도시의 創設이나 改造 또는 改良에 대하여 規定한 것이 都市計劃法이다.

건축물은 憲法上 보장된 財産權으로서 建築法의 自由意思에 따라 建築할 수 있는 것이나, 각자가 無計劃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安全上, 防火上 또는 衛生上 여러가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건축물의 用途, 地, 構造 및 設備에 대하여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規定한 것이 建築法이다.

建築法은 1962년 1월 20일 法律 第 984 号로서 당시 國家再建最高會義에서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 전에는 「朝鮮 市街地 計劃令」과 建築物法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단편적인 改正에 불과하였으며, 都市計劃法의 方向性이나 建築法 자체의 모순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은 계속 증대하고 있다.

本論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論外로 하고, 오직 建築法의 목적에 입각하여 建築法上 條文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 — 그것도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순이나 改正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建築法의 내용

建築法은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施行 細則과, 法律에 따라 위임된 地方 公共 團體의 條例로 되어 있다. 그 法律에 規定된 事項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면, 法律로만 完結한 경우도 있으나 상세한 규정 특히 技術的 基準이나 制限의 강화 또는 완화 등은 法律이 정한 바에 의하여 大統領令이나 閣令, 部令, 條例 또한 細則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法令을 차례차례 더듬어 가지 않으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建築法은 7章 附則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大別하면 集團規定과 单体規定, 制度規定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3. 集團規定

都市計劃區域內 및 閣令으로 정하는 地域內의 建築物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用途, 道路, 建築線 境界를 容積率 또는 높이등에 대하여 集團의 制限을 하고 있다.

A. 用途地域 및 地区

建築物은 都市를 구성하는 施設中 가장 큰 要素이며 그 건축물의 用途는 다종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용도의 건축물을 그 目的에 따라 적당한 地理的 상태의 場所를 선정 集合시켜 그 건축물의 用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共同施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用途 地域性의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都市計劃法 第17條에 都市計劃 區域內에서 住居地域, 상업지역, 公營지역, 녹지지역 또는 혼합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同 施行令 第14條에는 住居地域을 住居專用地域과 準住居地域으로, 公營지역을 公營 전용지역과 準公營지역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住居專用地域의 문제

주거전용지역은 그 용도로 보아 住居性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 그 용도에 있어서, 제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러나 現在の 法에는 용도의 구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건폐율에 있어서 완화하고 있어 이것 역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準住居地域의 문제

이 지역은 아직 지정된 곳이 없으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적 성격인 用途上的 지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용도지역을 近隣商業지역이라 칭하고 있다.

3) 혼합지역의 문제

일종의 다용도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그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건축제한은 상업지역과 별다름이 없으며, 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이러한 불투명한 지역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4) 再開發地区의 문제

재개발지구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보다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現行法은 이 地区의 용도와 대지 최소 면적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B. 道路

1) 도로 沿接 길이 문제

대지가 도로에 연접하는 길이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지의 形狀이나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2M 만 接하여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행을 금지하는 자동차 專用道路를 제외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우를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로에서 대지 입구의 대지가 한없이 길 경우,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연접하고 대지 안에서의 대지 폭이 2M가 되지 못할지라도 現行法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2) 법제23조의 특수 건축물 등과 차고의 대지와 도로 관계의 문제

이 대지에 연접한 도로의 폭이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는 關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關涉으로 정한 바 없다.

3) 도로 내 건축의 문제

일반적으로 도로 내의 건축은 地表下에 건축하는 것이나 公用 또는 公共의 用に 供하는 건축물로서 교통, 방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이면 건축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공중변소, 파출소, 도로上空에 架設한 상가 步行複道, 지하상가, 고가도로의 路面下에 설치한 건축물 등일 것이다. 이러한 建築物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C. 대지내의 空地 보유

근대도시는 가속도적인 발전으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게 되고, 때문에 도시 내의 空地는 부족하고, 토지는 高價가 된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면적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불규칙적인 밀집과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때문에 도시에는 건폐율로 제한하고 住居地域 내에는 空地地區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1) 건폐율의 문제

非防火地區의 角地나 非防火地區의 耐火構造 건축물은 건폐율을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未指定地域의—우리나라 대부분의 小都市는 未指定地域이다.—非防火地域에서의 건폐율은(대지면적— $30M^2$) $\times 0.6$ 이기 때문에 특히 小都市의 중심가에서는 非現實的인 규정이다.

2) 空地地區 指定의 문제

이 地區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제한하고, 隣地와의 간격도 제한하여, 주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이것

도 역시 空地率에 따라 數種으로 구분하여야만 한다.

$$h = \frac{H - 1M}{2}$$

도로의 가정 높이
 h = 도로면에서의 가정 높이
 H = 도로면과 대지의 고저차

D. 높이의 제한

도시의 각 地域의 容積率에 따라 장래 예정되는 건축 密度를 고려하여, 그 구역에 대한 도시 시설의 규모나 기능을 계획하게 되고, 通行上, 防火上 또는 위생상으로 보아 건축의 形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道路線과 건축물과의 수평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되면, 전면 도로는 대지의 지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것으로 假定하여 도로의 斜線 제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완화 규정을 두어야만 하겠다.

1) 容積率 割增의 문제

容積 制限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제한인데, 이 제한의 한도가 적절한 것인가는 論外로 하고, 空地率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空地率에 대한 容積率의 割増法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도심지에서도 많은 空地가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高架 工作物 内の 건축물 높이 제한의 문제

높이 100M가 넘는 T V송신탑에 설치하는 건축물, 전망대등이 일반 건축물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함에 틀림 없다.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2) 道路 斜線의 문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形態制限인데, 현실문제로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중 여기에 문제 삼고져 하는 것은 法 第41條 1項의 但書로서, 상업지역 안의 방화지구에서 土地 利用上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地域에서는 1.5倍의 道路 斜線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완화 규정으로서 斜線制限의 上限線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것의 上限線—예를 들면 5배 혹은 10배 등—을 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 防火地區

법 제12조의 不燃構造 구역은 防火地區나 準防火地區 이외의 시가지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 공고한 區域을 말하는 것이므로 不燃構造地域과 準防火地區를 区分할 必要가 있으나 建築法에는 準防火地區의 지정이 없으므로, 防火地區의 건축 제한을 약간 완화한 準防火地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隣地 斜線의 문제

금번의 法 개정에 隣地 斜線 제한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居住地域에 限하고 있을뿐이므로, 이 法의 정신을 살려 기타 지역에도 확대하여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 제한은 주거지역에 있어서보다 좀더 완화 함은 물론이다.

1) 지붕 재료의 문제

방화지구 내에서 지붕이 耐火構造가 아닌 것은 不燃材料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지붕이 지붕의 이음재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지붕의 構造物 재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

4) 도로면과 대지 지반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道路 높이 假定的 문제

2) 外壁 開口部の 방화문 문제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開口部에는 防火門이나 防火設備를 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市街地에 있는 대부분

의 건축물은 도로면을 제외한 隣地 경계 부분에는 이 규정에 抵觸되며, 一層은 境界線에서 3M 2層은 5M의 거리에 있는 部分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은 별로 없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정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完화된 규정으로써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F. 하나의 団地로서 종합적 설계를 하는 경우.

특정 街区에 접하는 도로를 前面도로로 본다는 규정은 있으나, 모든 대지는 일대지 단위 별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數筆의 대지를 합하여 하나의 団地로 종합적 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의 대지 단위의 규정으로는 여러가지 지장이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동일 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完화 규정이 필요하다.

4. 單体規定

전국 어느 곳에 건축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인데 건축물의 用途, 規模 및 構造에 따라 건축물의 安全, 衛生 및 防火 避難에 필요한 개개 건축물의 실적 규정이다.

A. 垜地

1) 대지의 안전 문제

특히 雨期에 있어서, 언덕이 붕괴하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垜地の 安全에 대한 위협이 年중屢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塹벽은 2M가 넘으면 工作物로서 적용 받게 되어 있으나, 언덕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이것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B. 各部의 구조 제한 衛生上の 규정

1) 居室의 채광 문제

채광 면적은 거실바닥 면적의 $\frac{1}{5} \sim \frac{1}{10}$ 비율 이상이

라야 하며,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 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등의 거실에 있어서 相當한 조명 장치를 하였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사무소나 점포 등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것 역시 例外 규정이 있어야 마땅하다.

2) 有効 採光 面積의 문제

건축 설비가 발달한 현대에도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병원의 병실, 기숙사의 침실 등을 제외한 거실에 있어서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가령, 상업지역에서 처마높이가 30M이고 隣地 경계선과의 거리가 1.0M가 된다고 하면, 건축물 上端부터 하부 5M까지에 있는 開口部만이 有効 채광창이 되고, 그 이하 즉 地반면에서 높이 25M까지의 개구부는 창이 있더라도 有効 채광 면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外壁에 개구부가 있어도 法上 채광을 할 수 없는 거실이 되고 만다. 앞 문제와 아울러 좀 더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3) 주택 거실의 地層 설치 금지의 문제

주택의 거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실, 병원의 병실, 기숙사의 침실도 포함시켜야만 할 것이다.

5. 安全上の 規定

1) 난간(欄干)의 높이와 구조(構造) 문제

「옥상 광장의 주위에는 安全上 必要한 높이 1.1M 이상의 欄干壁 또는 금속망을 設置하여야 한다」(승 111.2)로 되어 있으나, 이 屋上 広場에 대한 명확한 定義가 없다. 이에 대한 定義와, 「발코니」나 高架 연락 복도, 일반 계단 난간의 경우도 따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防火上の規定

건축물의 화재에는 건물 내부에서 發生하는 경우와, 외부로부터 발생한 화재가 연소하는 두 경우가 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火災에 대해서는 防火壁, 防火区劃, 界壁 등으로 화재의 피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막아 보자는 規定이 있고, 외부로부터 연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이나 지붕은 防火性能을 가지게 하고, 외벽 개구부에는 防火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主要 構造部를 耐火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내화구조는 통상의 화재 時 약 2시간 정도는 主要 構造部가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고 화재 후에도 간단한 수리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防火構造는 연소 방지의 구조이고 그 성능은 通常 화재시 20분 이상 견디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規定들이 설계나 시공에 있어서 충실히 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의문이다. 우리는, 대연각에서 16층 이상 철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절감케 된다.

1) 防火壁의 構造와 位置 문제

목조 건축물에 있어서, 방화벽은 무근 콘크리트 造 또는 組積造로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적조라 할지라도 自立할 수 있으면 무방하다고 본다. 그리고 평면이 7자로 된 건축물이나 높이에 段差가 있을 때, 7자로 된 부분 벽과 방화벽의 거리와 높이에 段差가 있는 부분과 防火壁의 거리에 대한 規定이 있어야 하며, 防火壁에 설치하는 開口部の 폭 및 높이는 2.5M 이하라고만 되어 있으나 예외 規定이 필요하다.

2) 防火区劃의 연면적과 위치 문제.

主要 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경우와 不燃材인 경우에 연면적의 한도에 差가 있어야 할 것이다. 防火区劃과 외벽 開口部와의 관계 規定도 필요하다.

3) 防火「담퍼」(DAMPER) 설치 문제.

환기, 난방 또는 냉방 설비의 「덕트」등이 防火壁이나 防火区劃을 관통하는 경우 防火上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規定이 없다.

4) 耐火구조 완화의 特例 문제

건축법 시행령 제93조 2항에서 기둥 또는 보만이 아니라 벽과 바닥도 포함시켜야만 하며, 그 構造에 대한 건설부 장관의 구체적인 規定이 있어야만 한다.

5) 防火門의 구조 문제.

防火門은 防火壁의 開口部, 防火区劃, 외벽의 開口部, 避難계단의 屋內 개구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장소에 따라 화재 시에는 자동 개폐할 수 있는 防火門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에 설치하는 샷문을 달도록 規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건축물 중에 이러한 방화문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방화문의 제작과 보급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6) 耐火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限界 문제

특수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대한 規定(法17)은 있으나, 위험물 창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規定이 없다. 위험물 창고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서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는 規定이 필요하다.

7) 防火性能 지정의 문제

「건설부 장관이 同等 이상의 耐火性能을 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耐火性能에 대하여는 韓國工業規格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C. 특수 건축물 등의 피난 시설.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는, 防火施設에 관한 규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1) 避難 및 消防도로의 문제

시장이나 지하 상가에 있어서, 복도의 폭, 천정의 높이, 계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直通階段의 설치 기준의 문제.

용도나 구조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의 수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계단 상호간의 거리와 계단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3) 避難階段의 설치 기준의 문제

앞의 문제에서 직통계단의 수가 결정되면, 이 직통계단 위에 여하한 계단도 法的으로는 불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직통계단은 屋内に 있는 屋外에 있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계단이 옥외에 있으면 非常階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나 건축법에는 비상계단이라는 명칭은 없다. 이 피난계단은, 백화점을 제외한 기타의 건축물인 경우 5층 이상인 건축물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직통계단에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構造를 제한하여 화재 시 피난을 安全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피난계단이다. 피난계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직통계단이 바로 피난 계단도 될 수 있는 것이다.

地上層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한개만 있으면, 이 건물에는 직통계단이나 피난계단이나 할 것 없이 계단은 1개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5層 이상의 層에 통하는 층에만 피난계단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다행히 5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4층 이하의 화재 때는 피난계단은 無用之物이 되므로,

당연히 避難層까지 避難階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屋內 피난계단의 구조 문제.

외벽은 耐火構造가 아니라도 좋다는 것인데, 연소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耐火구조로 하는 것이 좋고, 排煙 설비를 하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D. 內裝의 제한.

耐火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主要 構造部만을 말하므로, 화재 시에는 內裝 재료에 따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실내의 화재에는 화염 뿐만 아니라, 연기, 까스 등으로 피난 및 消火가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수 건축물이나 직접 外氣에 면한 開口部가 없는 거실에는 內裝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수 건축물이나 거실로부터 地上에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천장의 실내에는 不燃材料, 準不燃材料, 또는 難燃材料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E. 建築 設備

건축법 제24조에 「건축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閣令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避雷 설비, 電氣 설비, 給排水, 配管 설비, 焚口 및 昇降機의 구조에 관하여는 아직 閣令으로 정한 바 없다.

F. 工作物

1) 遊戯用 觀光用の 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

G. 構造 耐力

1) 組積造의 높이 문제

지진이 없는 우리나라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 壁式구조인 조적조가 가장 경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組積造는 높이 13M, 처마높이 9M 이상은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法11, ②) 그러나 構造耐力上으로 보아 이 규정은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벽 두께 및 기타의 문제

바닥이 木造인 경우와 철근「콘크리트」인 경우를 구별할 것이며, 벽 두께, 耐力壁의 壁量 및 평면에서 면적 한도, 규정이 필요하다.

3) 補強「콘크리트 브릭」 규정 문제

「브릭」 구조는 특징이 많은 구조이다. 그러나 法上으로 볼 때 2층 이상은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일 2층 이상으로 건축하려고 하면, 보강「콘크리트 브릭」 구조로 하여야만 하는데, 이 구조에 대한 규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6. 制度 規定

法令 시행상 필요한 諸 수속, 위반 건축물 등의 조치, 벌칙, 행정, 救濟 등의 규정인데, 이것은 實體 規定의 효과를 현실로 확보하기 위한 補綴적인 設定이다. 이것은 전부가 行政的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결함은 곧, 도시와 건축물의 實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좋은 法이라 할지라도 그 운영이 졸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때문에 現行 制度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A. 건축 행정 擔當官 제도

建築 行政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대하여, 건설 부 장관이 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 기술자로서 건축 행정 담당 別定職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건축 행정에 있어서는 이 자격을 가진 사

람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지방 관청에서는 건축의 문외한이 건축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구나 郡에 있어서는 건축 행정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B. 건축 審査會 제도.

건축법의 공정한 운용을 하기 위하여 존립하는 기관으로, 都市計剛法の 도시계획 委員會와 같은 것이다. 이 제도는 행정청의 허가에 대한 동의와 諮問에 응하고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요 항을 조사 심의하고, 異議 申立에 대한 裁定이나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法 해석이나 독주를 막자는 것이다.

C. 위반 건축물의 벌칙과 대상자.

법의 일정한 운용으로 건축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 벌이 엄하여야 하며 공정 하여야만 한다. 벌칙의 대상자로서는 建築主,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作業者, 所有者, 管理者, 占有者 등이 있겠으나, 罰則 対象行為와 그 対象者를 벌칙으로 연결지을 때 건축에 관련한 각자의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D. 특수 건축물의 報告 및 檢査 제도.

특수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지, 구조, 건축 설비의 유지 보전의 상황을 報告 또는 검사하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 이 제도는 도중에 용도 변경이나 구조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昇降機 혹은 피난계단, 防火門의 성능에 대하여 異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점검하여 有事 時에 대비하자는 의도이다.

E. 建築 協定 제도.

특정 區域으로서 住宅地의 환경이나 상점가로의 便利를 고도로 유지 증진하는 목적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자나 地上權者가 그 구역에 있어서 건축물의 배치, 위치, 구조, 용도, 형태, 의장, 건축 설비 등에 대하여 그 기준을 협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자는 것이다.

6. 結言.

이상은 건축법을 중심으로 法條文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을 나 나름대로의 견해와 생각으로 지적하였으며, 여기에 노출되지 않은 것도 연구할 점이 많다는 것을 부연해 둔다. 이 법은 시행 당시에도 法制定의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제정 당시부터 내포하고 있었으며, 技術面은 물론이고 법 조문의 字句에 있어서도 오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법이 公布施行된지 10여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建築法뿐만 아니라, 都市計劃法, 建築士法, 建設業法, 기타 관계 法令들을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改定을 止揚하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연구로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T.V의 뉴스는 大邱의 교회 화재 피해 상황을 알리고 있다. 教會는 집회장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200M² 이상이면 耐火構造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教會는 非耐火構造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法 위반이 된다. 또한 內裝 제한이나 피난계단의 整備가 잘 되어 있었더라면, 멀리서 釜山 電信 電話局이나 최근의 大然閣 「호텔」 「파레스」 호텔 등의 화재 피해는 좀 더 적었을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法の 不備나 盲點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會員 金星綜合設計公社 代表

공 고

건설부공고 제49호

제 9 회 건축사 자격시험 장소등 공고
제 9 회 건축사 자격시험 장소 및 실기시험 (설계) 과제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2년 6 월 21일

건설부장관

1. 시험장소 : 홍익대학교
(※ 수험번호별 배치는 수험표 발급시계시함.)
2. 실기시험 (설계)과제
1 급 : 연립주택
2 급 : 새마을회관
3. 과목별 시험일시
1 급 : 필기시험 = 1972년 7 월 15일 10시부터
실기시험 = 1972년 7 월 16일 9시부터
2 급 : 실기시험 = 1972년 7 월 15일 12시부터
필기시험 = 1972년 7 월 16일 9시부터
(※ 상세한 시간표는 수험표 발급시 계시함.)
4. 수험표 발급일시 및 장소
일시 : 1972년 7 월 14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정.
5. 응시자 주의사항
실기시험에 필요한 용구는 필히 지참할것.
단, 설계용지는 지급한다.